

도로 참고자료로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나. 제2안 : 재정 건전성 분석 및 진단 장치로 활용

재정정보를 망라한 참고기능이 아니라 재정위기관리장치로 분석제도를 한정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지방재정 운영에서의 효율성과 생산성 등과 같은 적극적인 영역(포지티브 측면)에서의 성과관리는 재정평가제도에서 담당하며, 재정분석제도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관리 측면(네거티브 측면)에 집중적으로 초점을 맞추어 운영하는 방안이다. 미국의 신용평가지표와 FTMS 지표, 그리고 일본의 지방재정분석지표에서는 주로 건전재정관리에 대해 분석초점을 설정하고 있다.

이때, 재정의 건전성 관리는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 수준에서의 안정적 재정운영은 보장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재정상황을 분석·진단하는 작업으로 축소된다. 재정건전성 관리는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구분되어, 지방채, 잠재세입능력, 재정압박 등으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방재정 구조의 특성상 재정위기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실제 위기관리와 같은 특수한 상황을 대비한 재정분석제도의 실효성은 높지 않을 수 있다.

다. 제3안 : 현행체제 유지, 결산서와 통합운영

현행 재정분석체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쟁

점이 부각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기존의 분석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분적으로 개편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결산서의 기본정보를 이용하여 현재의 10대 지표 중심의 재정분석·진단체제를 그대로 존속하는 방안이다. 다만, 재정평가제도가 별도 운영되기 때문에 현행 제도에서 “생산성”과 “노력성” 영역에서의 점수화를 통한 재정평가 기능의 필요성은 높지 않다. 또한 현재의 4개 부문 10개지표가 서로 유기적 혹은 망라적으로 연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4개 부문에 대해 유형을 구분하는 실익이 약할 수 있다.

따라서 10개 지표를 그대로 존치할 경우 부문별 재배열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쟁점으로 제기될 수 있는 것은 “생산성”과 “노력성” 부문인데 재정 평가 기능이 제외된다면 이 부분을 상위 가치인 “효율성”의 포괄적인 용어로 두 영역을 통합 분류하여 분석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재정력 지수와 재정자립도는 상관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1개의 지표에 대한 정보만 제시해도 충분할 것으로 판단되며 결산서에서 기본정보로 제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그런데, 재정분석제도를 현재와 같이 결산서의 정보를 바탕으로 운영할 경우, 결산서의 형식과 기능 개편을 통해 재정분석제도의 내용들을 포함한다면 별도의 제도적 장치로서 재정분석장치를 운영할 필요성은 적을 수 있다. 추가적인 재정지표들은 굳이 법제화를 통해 생산하기 보다는 결산과정에서 지방의회에 제출하거나 지자체의 재정정